第284回國會 (定期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9月24日(木)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정당·정치자금제도 등에 관한 공청회

審査된案件

1. 정당·정치자금제도 등에 관한 공청회 ····· 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관련법에 의하면 오늘 공청회와 같은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이면 개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꾸준하게 한결같이 여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정치가 선진화되고 나날이 개혁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을 열기 위해서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과 관계되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에서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공술인으로 모시고 정당·정치자금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당·정치자금제도 등에 관한 공청회

(10시05분)

○위원장 김충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당·정치자금제도 등에 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청회 개최의 취지와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현재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모두에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계신 권위자분들을 모시고 이 공술인들의 공술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의에 역시 공술인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분야와 관련해서 공술해 주실 분은 세 분 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 공술인들의 공술이 모두 끝난 뒤에 우리 특위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 공술인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술인분들의 공술 시간은 각자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시간을 지켜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공술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공청회 의제에 관련된 내용을 가급적이면, 벗어나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공술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국회법상의 이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특위

의 위원분들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술인들의 공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 위원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간사로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는데 공식적으로 인사 안 하셨잖아요?

○이상민 위원 예.

○위원장 김충조 오늘 짤막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간사를 하다가 저희 당 사정으로 교섭단체가 깨져서 지금 간사 자리를 잃었는데……

○위원장 김충조 금방 또 다시 복원되겠지요.

○이상민 위원 예, 곧 복원이 되어서 다시 간사로서 열심히 활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당초의 특위 취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술에 들어가기 전에 공술인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술을 하실 순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종빈 명지대학교 교수님.

다음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지원국장.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지금부터 그러면 공술인분들의 공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교수이신 윤종빈 공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 윤종빈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 정외과 윤종빈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관련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치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을 가진 저로서는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당 제도와 정치자금 제도 부분인데요.

정당 제도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당원 확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당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한국적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께서는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을 우리가 이상형으로 한번 추구해 보자는 논의가 한동안 진행되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당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도 어려워지고 결국은 자꾸 국민 참여 경선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당의 하부 조직은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낸다면 뭔가 좀 전향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 확보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당의 모델을 얘기할 때 대중정당 모델은 쉽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원내 정당 모델이나 카르텔 정당 모델을 한국 정당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전문가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두 번째는 아주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구당 부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2004년 3월에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는데요. 사실 현재 상시적으로는 당원협의회 그리고 선거 시기에는 정당 선거사무소·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사무실을 갖고 있는 지구당이 없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지구당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다수의 당시 국회의원들께서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는 일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구당 운영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 그러다 보니까 비리의 유혹에 빠지게도 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적으로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국민 여론이 아마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실익을 떠나서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당원협의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지역의 풀뿌리 정당 조직이 좀더 굳건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내 경선의 제도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한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 내부의 경선은 정당 고유의 축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꾸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2007년 대선 과정에서도 경선 방식에 대해서 또는 그 투표 방식의 반영 비율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후보들 간에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총선을 앞두고도 후보자 등록에 임박해서까지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혹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예, 이것은 유동적입니다마는, 대선은 6개월 전 혹은 총선은 3개월 전에 후보자 등록을 선관위에서 받든지 아니면 후보 결정을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자신을 알릴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고 특히 언론이나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선거를 펼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방식으로 이런 짧은 13~4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을 두고 임박해서 후보를 결정한다면 정책 선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당원 당규에 못 박더라도 아마 임박해서는 뭔가 상황적인 논리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간에. 그래서 그것을 정당법이든 선거법이든 이런 부분의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책연구소의 활성화 부분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당의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당 부속 정책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보조금의 30%가 의무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당 정책연구소가 현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정책연구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다시 정책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제도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적정 정치자금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혹은 국회에 대해서 불신이 강하다 보니까 정치자금 상한선을 올리자라는 얘기는 누구도 감히 꺼내기 힘든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후보자가 혹은 당선된 당선자가 혹은 국회의원 개인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얼마만큼의 정치자금이 후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적정한 정치자금 규모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서 말하자면 선거구별 선거인 수라든지 자치단체의 경제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정치자금 규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소액 다수 후원금 모금 활성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와 연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한 정치자금 규모가 얼마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 2004년도에 개인이 모금할 수 있는 한도를 3억에서 1억 5000으로 절반을 낮추어 버렸고,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금액도 1억 2000에서 2000으로 6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소액 다수 모금만 가능하다면, 소액 다수 모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자금 흐름에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얘기지요. 그것만 가능하다면 1억 5000이 아니라 3억, 5억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 정치자금 흐름에 대해서 의심과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국회의원들께서는 1억 5000을 꽉 채워서 모금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는 상한선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게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 단체의 기부 금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선관위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선관위에서도 개정 의견에서 조금 조건부 허용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법인 단체의 기부를 조금 푸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당시에 이것을 지구당과 함께 법인 단체의 기부 금지를 결정할 때 사실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된, 5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당장은 반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안으로 아마 선관위에서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몇몇 의원들께서도 정치인들께서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투명성이 보장된 방법은 대안으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그래서 선관위에 기탁하는 방법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대기업이나 협회나 그런 공신력이 필요한 공공성이 필요한 단체들의 기부는 계속적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조금 배분의 형평성 보장 부분인데요.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80년대부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한테 우선적으로 50%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기존에 배분받은 교섭단체들도 가져가고 나머지 군소 정당이 득표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득표수에 따라서 나누어 가져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군소 정당한테는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군소 정당이 좀더 살아나서 많은 우수한 정치 지망생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만약에……

현행은 국회의원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2%가 아니고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2% 이상 득표한 정당으로 한정을 하되 의석수에 따른 배분보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투표의 득표수에 따른 배분이 유권자의 지지를 좀더 잘 대표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가, 단 2%라는 최소 조건은 만들어 두자, 우리 비례대표 정당 의석을 배분받는 최소 조건이 5석 혹은 3%로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2%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윤종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정연정 공술인님 공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연정 배재대학의 정연정입니다.

앞서 윤종빈 교수께서는 정치 개혁에 관련된, 자금과 정당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최근의 정치학자들과 정당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몇 가지 중요 쟁점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범위 안에서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밖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약적으로……

그래서 제가 첨언하거나 또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 개혁의 방향이 이제까지는 부패 정치라든지 과거 정치 청산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2개의 가치를 상당히 강조해 왔다, 그러니까 그 개혁 당시에는 상당히 필요했고 중요한 가치고 또 그만큼 우리 정치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 외에 뒷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개혁의 방향이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과도한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금법이 굉장히 강조되고 과도한 규제들이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제한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뭐 우리의 문화에서는 돈을 가지고 참여한다, 기부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 왔는데 서구 유럽의 발전된 정치 환경하에서는 돈도 하나의 참여 수단이 되는 그런 자유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문화가 성숙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향으로 정치 개혁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통한 투명 정치의 어떤 단계

를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참여를 지향하고 또 그 참여를 통해서 국민과 정치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선거 때 사실은 어떻게 가서 후보자 만나기도 무섭고,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후보자도 모르고 유권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행위들 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또 편법으로 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윤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물론 정치가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있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소외감도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나로부터 멀리 있다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게 됨으로 해서 잘 모르고 또 TV나 언론에 비치는 모습들은 좋은 모습은 아니고 하니까 사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또 생기고 싫어하게 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정치자금 좀 완화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 여론들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닌가……

좀더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형태의 향후 정치 개혁의 방향, 지금 우리의 가치가 새로운 정치 개혁의 방향은 이런 투명성과 효율성으로 인해서 강조되어 왔던 그 뒷전에 참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조금씩 완화하고 또 변화시키는 방향의 개혁이 향후의 어떤 중요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선진 정치의 중요한 어떤 변화들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그런 정치 개혁이 이번에는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지구당인 것 같습니다. 윤종빈 교수께서는 지구당의 문제가 국민적 정서상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지구당은 그렇겠지요. 돈 먹는 하마이고 또 사조직화된 그런 지구당은 아마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돈 먹는 하마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이미지의 지구당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도 없고요. 또 재정적인 어떤 독립이라든지 또는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구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어떤 참여와 권한보다는 오히려 지구당 위원장이, 중앙당에서 파견되거나 점지된 위원장이 행사하는 권한이 더 컸고 눈치를 봐야 하고 이런 구조들에서 움직였고 또 돈은 돈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는 형태의 과거의 지구당은 사실은 돈 먹는 하마이고 부정의 온실이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혁의 어젠다로서 지구당의 문제는 정당의 지방조직입니다. 정당의 기본적인 지방의 참여 조직을 선거구별로 조직해서 그것을 일상화시키고 선거운동이든 아니면 정당의 일상적인 운영 과정이든 충분한 권한과 재정적 독립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선거 이외에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제와 프로그램들을 생산해 내는 그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구당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나 건강한 정당의 지방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지방정당, 지방지역조직으로 이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공청회 공개화라든지 당원들에 의한 공개적인 위원장의 선출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제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당비를 모아서 당비를 활용하고 또 일부를 중앙당에 전달하면서 중앙당의 운영에 또 동조하고 참여를 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문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권한 또 어떻게 재정 독립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당법도 일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도 일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끝쪽에 몇 가지 제안사항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뒤에 이태리체로, 약간 누운 글씨체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는 사실 현행 당비라고 하는 것이 지구당, 소위 지역 선거구별로 모여져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지방의 어떤 당협이라든지 이런 조직은 오히려 여기서 당비를 모아서 중앙당에 일부를 보내지만 중앙당이 받는 국고의 일부를 또 분배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일부 보내 주면서 충성을 하기도 하지만 돈을 오히려 중앙당에서 분배받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눈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고 또 그 지역에서 행사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된 액수를 갖게 되고, 기타 등등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당비를 새로운 지방조직들이 선거구별로 걷게 되면 그 안에서 최대한 당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그 정당의 지방조직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일부를 중앙당에 비율을 정해서, 예를 들면 전체 모으는 당비의 몇 %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중앙당의 기본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하고 캐나다가 이런 방식을 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원래 중앙당이 그렇게 거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지방당들이 힘이 세지요. 권한도 많고 재정권도 상당히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멤버십 피(fee)를 냅니다. 중앙당에 멤버십 피를 주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처지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진 정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고요.

현행 우리의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국고 분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정당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득표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그 정당이 운영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일정 부분의 평가도 이 국고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추가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비를 납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고보조금이 분배되어지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물론 지금의 현행 방식이 주가 되되 어떤 진성 당원들을 좀더 증가시키고 지역 단위에서 어떤 참여를 좀 진작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고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현재 중앙당 중심의 후원회는 폐지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지역 안에서는 굉장히 비공식적인 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가동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름만 달리할 뿐 여러 가지 형태로 있고 또 당비로 납부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특정한 후보자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비를 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구당 선거구별 후원회 조직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하면서, 단 선거구별로 이루어지는 후원회의 어떤 자금 모금 내역은 최대한 투명하게 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정당의 지방조직의 당원 지원에 대한 자금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도적인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 그래서 정당의 지역조직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풀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에 막대한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당의 지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당이 갖고 있는 후보자 선출 또 여러 가지 공천 이런 과정에 특정 비율의 의사결정권을 분배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구당, 새로운 정당의 지방조직들이 중앙당을 비롯한 전체 당 재정 모금의 중심 창구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아진 돈의 상당 부분을 지역정당조직이 소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비율을 중앙당의 회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한다라는 것 그리고 최소한 선거구별 지방의 정당조직하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공통 후원회 조직은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준다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연 정당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얼마만큼 거리감을 줄여갈 수 있는가, 그리고 돈과 규제로 묶는 것이 아니라 좀더 가깝게 소통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적절한 권한을 줌으로 해서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정연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지원국장님 공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용희 중앙선관위 정당지원국장입니다.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미에 약 20여 년 동안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정치자금 제도 분야에서 종사해 온 실무자로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련된 자료의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 방향은 첫째 정당자금의 원활한 조성, 둘째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셋째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넷째 불합리한 정치자금 사무처리 규제 완화, 다섯째 정당의 당내 민주화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작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법인단체가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시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 부분에서 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당시 중앙당 후원회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2년 동안의 거치 기간을 두어서 2006년부터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지금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수입원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변칙적인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후보가 어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특정 당비를 내서 그것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 자문을 해 보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을 하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당에 직접 기부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에 한해서 하고 또 그리고 특정 정당을 지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뮤츄얼(mutual)하게 내게 되면 그것을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식을 의견으로 냈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자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면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다 막혀 있습니다. 내가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연정 교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꼭 투표를 통해서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을 내가 원하는 정당에 기부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방식도 하나의 참여의 방식인데 그 자체가 지금은 봉쇄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을 하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도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 주체는 개인에 한정을 하고 연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부를 허용하되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당비에 준해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그 인원과 금액을 보고토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기탁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상은 개인 기탁금에 한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정치자금 기탁제도는 개인에 한해서 정치자금 기탁을 선관위에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경우에도 어떤 정당을 지정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관위에 내게 되면 선관위는 그것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의해서 각 정당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자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호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발품에 의해서, 안면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을 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내는 정치자금을 어느 정당에 줘라 이렇게 지정해서 낼 수 있는 자유를 마련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치자금을 기탁을 했을 때 그 기탁금을 전액 다 지정한 정당에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정한 정당에 주고 50%는 다시 뮤츄얼 형태로 모았다가 나중에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의해서 배분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의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수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공무담임 제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공선법에 준해서 재판 기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금액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반영되는 선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금액 산정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지역구에 추천한 정당 또 그리고 15% 이상 추천한 정당, 5% 이상 추천한 정당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100% 지급을 하고 또 15%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50%를 지급하고 5%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30%를 지급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숫자에 의해서 막상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의석수하고 득표수,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한 득표수 비율에 의해서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여성후보자의 추천 비율은 막상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개정 의견은 국고보조금 지급액의 20%는 여성 추천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반영되는 선거의 범위에서 지금 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나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다른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2% 이상 득표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배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고보조금 강제집행 금지 등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은 정당의 정치활동에 활용하게 그리고 정치활동 중에서도 특정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간혹 정당의 채무와 관계돼 가지고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함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머지 불합리한 정치자금·사무처리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의 정당의 당내 민주화 강화 등입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시기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윤종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 조정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실무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이 평상시에 중앙당 100명 또 시도당 전체 다 합해 가지고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일손이 달리고 정당에서 임시직으로 사람들을 많이 쓰기를 원하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이라도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50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명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위원 직선이 도입이 되면서 교육위원이 당선이 된 뒤에는 지방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이 되게 되면 또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당원 가입을 금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사항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2004년 개정 정치자금법은 한국의 정치자금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치자금 제도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만으로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자금 제도는 부정의 방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발전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온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008년과 2009년에 그동안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서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나 원내와 원외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개정 의견에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넘어 보다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던 국회의 파행적 운영의 문제는 국회 내부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정당·정치자금 제도와 후보자 추천 시스템에서 찾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당원들이 자율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공직자를 선출을 하고 그리고 앞서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정당이 정치자금에서 중앙당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고 국회 운영도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과제를 대충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중앙당과 지역 단위 정당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원내와 원외 간의 공정한 경쟁 시스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현역과 도전자의 공정한 경쟁의 틀 그리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토착 세력화될 수 있는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정치자금 제도, 그러면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는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은 무엇이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보다 차원 높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김용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공술인 분들의 공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공청회의 모습이 외부에 비쳐 보일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아주 곱지 않은 눈으로 봐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왜 우리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가라고 하는 것도 그 곱지 않은 눈길을 매혹하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때 다루게 되는 모든 사안을 다룸과 동시에 거기에 보태서 내년도 예산심사 그리고 작년도 결산심사 그리고 잘 아시는, 국민들이 거의가 다 알고 계시는 국정감사, 이러한 것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에서는 상임위에서 결산심사·예산심사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결산심사·예산심사, 뿐만 아니라 중추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개정 문제 그리고 이것이 소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법률심사소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런 활동도 또 하게 돼 있고, 법률안 제·개정과 관련된 토론회 또 오늘과 같은 공청회 등등 해서, 또 보태지네요, 국정감사 준비 등등 해서 적어도 의원 한 분이 3역·4역을 해야 되는, 같은 시간에 그런 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수행해 나가는 업무와 관련된 현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우리 위원들이 참석해 주신 것은 참석률이 아주 우수한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다 인사를 하셨는데 김기현 위원께서 짤막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고 맑게 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선에 저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돼 있고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7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 7분 동안에 질의 그리고 답변이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추가질의 또는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질의가 다 끝난 뒤에 5분씩 추가질의 내지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하실 공술인을 지정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바쁘신데 저한테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위원회 가신다며요?

○이상민 위원 예.

○위원장 김충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해 드렸습니다.

○이상민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자신도 법률가 출신이고 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10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상 선관위원회에 물어봐도 뾰족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 선관위의 자세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규정에 있어서 금지규정, 제재규정이 전제가 되는 금지규정 행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식도 네커티브 방식이냐 포지티브 방식이냐 이것도 정밀하게 검토를 정개특위에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연정 교수님, 지구당 부활 문제 말씀하셨는데 명칭은 어떠하든 간에 지구당 형식의 지역별 하부조직 단위로, 정식으로 등재하는데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의원사무실이 있거든요. 물론 정당사무소일 경우와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의원사무실을 유지하는데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의원사무실뿐만 아니라 의원이 없는 각 당까지 합해서 그 비용을 합산하다 보면 그 비용이 몇 배로, 각 지역마다 비용이 합산될 것이고 이것이 종국적으로 정당·정치인한테 비용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은 일정 부분 세비가…… 물론 그것으로 다 충당도 안 되지만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지구당위원장 맡으면서, 별다른 생업도 없으면서 지구당 운영할 때 그 비용도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100~200만 원 드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대가 넘어섭니다. 직원 두고 사무일 운영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이 현실을, 고비용이 되는 것이 뻔할 텐데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진술인 정연정 예,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당운동을 지방에서 할 때 과거적 방식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운영절차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영절차를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생각해 보고 또 상시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력을 상시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야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그 지구당에서 하는 역할과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운영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거둬들이는 당비의 거의 대부분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위원장이 사실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반드시 1인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지역구를 움직이고 조

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중앙당과의 연계가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인사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논의해 보고 대체적으로 공동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 또 문화에 비추어볼 때 당비에 의존해서 하기에는 매우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당비나 후원금 안 내보셨잖아요?

○진술인 정연정 당비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후원비는 조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세요?

○진술인 정연정 예, 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자발적인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선의 정치인으로서는 검은돈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실……

○진술인 정연정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현재적 상황에서 당원의 충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 구도를 생각하면 갑갑한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정당의 활동들이 지역의 정당조직을 통해서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적 모습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요.

윤종빈 교수님, 소액 다수 후원금 모금 알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선 정치인들의 고충이 뭐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후원금을 누가 보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 활동에 매달리고 하다 보면. 사실 일방적으로 돈을 후원계좌에 입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개인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 소속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의원들은 보면 집단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액 입금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형사 문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소액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 후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그냥 무작정 그 정치인한테 후원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예 친구나 친인척 빼놓고는 대부분 친인척도 후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남을 대변해서 어떤 것을 해 달라거나 어떤 법안을 관철해 달라라든가 이럴 때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소액으로 하는 것까지 결부되어서 하는 경우에 사실 의원으로서는 함정에 빠져 가지고 휘말리는,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 그룹에서 과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의 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앞서서 그것을 양성하고 면책규정을 두자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앞장선다고 비난을 해서 감히 잘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학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법인단체 기부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 교수님,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개인이 소액으로 해도 이해관계가 결부되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법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 더구나 법인이 대부분 영리법인, 기업들일 텐데 기업들은 영리활동이라는 본질적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기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칫하면 정치권이 검은돈 먹고 뇌물수수 이런 의혹에 휘말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 교수님?

○진술인 윤종빈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앙당 후원회도 금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돈이 드는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조건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다수를 얘기하게 되었고 법인단체의 기탁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정치자금 모금을 많이 허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기부를 하고 나서 대가성을 바라는 부분은 받으신 분이 공식적인 채널로 선관위 기탁으로 받은

것으로 알게 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까지 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교수님,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 사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대가성 문제는…… 정치자금 부분은 소액이든 법인기부든 간에 대가성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휘말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과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김용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 김용희 예.

○강기정 위원 지금 당원협의회가 정당법 37조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읍·면·동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당원협의회 독자적인 명칭으로는 지역구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주시당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북구갑 당원협의회 이렇게 해야지 되던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 내부의 행사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당원협의회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강기정 위원 그렇지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원협의회 활동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협의회회장…… 보통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회 그럽니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까 윤종빈 교수님께서 당원협의회만 잘 활용하더라도 선거구민 접촉하는 채널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반대로 정연정 교수님은 지금이야말로 투명성·효율성 제고 측면을 넘어서서 참여의 자율성 확대, 지구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자 이런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윤종빈 교수님, 지금 당원협의회가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저도 명칭을 불문하고 지구당 부활의 의견을 내놓고 법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원협의회 가지고 하기에는 주민 내지는 유권자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물론 현역 의원님들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나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진술인 윤종빈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드는 고비용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당원협의회 부분은 사실은 정당 활동을 제약받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합리적이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정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원협의회가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구당 부활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 당원협의회를 그렇게 법인격으로 인정을 안 하고…… 독립…… 뭐라고 합니까, 국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법인 독립격이요?

○진술인 김용희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강기정 위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 낙선한 또 신인정치인들이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연구소, 무슨 모임, 재단, 사단법인.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그것을 만드는 신인정치인은 정치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거기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정치활동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다른 행정적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교수님 의견도 좋은 말씀인데 정연정 교수님 말씀처럼 참여의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려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 소위 지구당위원장들이, 원외 지구당위원장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선진화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제 의견 겸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것은 김용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경선의 정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예.

○강기정 위원 그런데 경선이라면 당내 경선도 있고 선거공직후보자 경선도 있는데 공직후보자 경선할 때 여론조사나 국민경선이나 이런 것 말고 심사점수 일부가 들어갈 경우는 경선으로 안 본다면서요?

○진술인 김용희 예.

○강기정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떤 공직후보를 뽑을 때 예를 들면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30%, 한 20% 정도는 아주 객관적인 좋은 분들로 구성해서 심사 점수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경선이 아니어 버린다 이래서 경선의 정의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공직선거법을 규정할 당시에는 당내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꼭 법에 다 담겨져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그것을 법 개정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 현행법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경선만으로 했을 때 왜곡과 민의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또 당심이 전달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심사점수를 넣고 싶은데 넣는 순간에 경선이 아니어 버리니까 경선 불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선관위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서는 그냥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김용희 예, 제가 하던 말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강기정 위원 예.

○진술인 김용희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법에서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가 일부, 독일이 정당법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정치자금조성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당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모두 다 정당을 돕고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어떤 활동을 규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정당법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직후보를 배출하고 또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쟁취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조직체가 가장 나한테 몸집에 맞고 효율적인지, 내가 동원 가능한 자금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것은 정당이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완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전체적인 틀을 딱 정해 가지고 이것은 한다,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지금 당 대표 경선은 후원금 모금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당 대표에 준하는 지도부 경선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정확히 질의의 의중을 제가 잘……

○강기정 위원 지금 정당 내 지도부를 뽑을 때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이 있고, 물론 당별로 명칭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는 1억 5000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정치자금을?

○진술인 김용희 예.

○강기정 위원 그런 데 비해서 최고위원 출마, 사실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당으로 보면 거의 지도부 격으로 비슷한데 최고위원들은 후원금이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예.

○강기정 위원 그 점은 어떤가요, 개정할 필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검토 못 해 보셨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아니,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고 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강기정 위원 검토의견을 한번 주시기로 하고요.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당적 보유 문제, 아까

저는 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적 보유를 지금 현재 2년 내로 못 하도록 다른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적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까?

○진술인 김용희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금 직선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선이 되게 되면 의원 신분을 보유하게 되니까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당적 보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의 경우에는 당선돼서 지방의원의 신분을 갖더라도 여전히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기정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용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법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관련 법규에서 하여간 규제 위주로 못하게 하는 금지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정치자금 분야에 있어서도 검은 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없애자 하는 데는 누구든지 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만 너무 그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 하게 돼 있는 그리고 자기 돈이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말 중산층 서민의 삶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 길이 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희 공술인께 하나 여쭤보려는데요.

정당의 유급 직원 수가 평상시에 현재 200명으로 돼 있지요?

○진술인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한나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최근에 맡아 가지고 활동하면서 보니까 유급 직원 숫자가 이래 가지고서는 실제로 활동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적은 규모의 시도당에 기껏해야 한 서너 명, 네댓 명씩의 유급 직원이 있는데, 안 그러면 이 인력 200명 가지고 전국을 다 가동할 수 없으니까…… 시도당을 두게 된 것은 시도당에서 열심히 지역활동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잘하듯이 지역 정당 조직도 활성화하자는 것이 큰 흐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진술인 김용희 예.

○김기현 위원 그런데 한 서너 명, 네댓 명 되는 유급 직원들 데리고 각종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해 준다거나 각종 정책을 기획해 가지고 투어를 한다거나…… 조직관리는 아예 뒷전이고, 조직관리 하는 것은 아예 안 한다 치더라도 그 일조차도 못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당법에다가 200명으로 묶어 두는 게 합리적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증원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폐지해 버리고 정당이 갖고 있는 수입 범위 내에서 쓰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진술인 김용희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중복되는 의견입니다. 지금 정당법의 규제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지구당 사무실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분하고 유급 사무직원을 정해 놓은 부분인데 제가 헌법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헌법 8조에서 정하는 것도 국가는 정당에 대해서 정당활동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법률을 정하라고 돼 있지 정당을 규제하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당내 민주적인 활동을 보다 촉진하는 쪽의 법률 규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데 지금 유급 사무직원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당도 야당도 정당에서 다 의견을 내 가지고 스스로 묶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논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 정당에서 적정하게 알아서 시도당 운영도 또 지역단위의 당 운영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예.

○김기현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김용희 공술인께 여쭤보려는데 정치자금 후원금 관련해 가지고 후원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현재는 후원금을 수입 처리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후원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거나 지정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국고 귀속 또는 공익법인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 의견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예.

○김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송금되어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송금된 사람 이름만 딱 나오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그 외에 더 이상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규에 있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현행법으로는 정치자금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기현 위원 그러면 다른 법에 그 사람의 주소가 어떻게 되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현행 법규에 마련돼 있느냐고요. 없지요?

○진술인 김용희 은행연합회 쪽에 저희가 공문도 내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김기현 위원 현행 법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김용희 아니요, 지금 현재는 후원회 쪽에서 해당 지점에다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각 지점에서는 예금자 보호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를 꺼려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게끔……

○김기현 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놓고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후원인이 돈을 넣었는데 이름만 나오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자기를 일부러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나는 그 사람을 후원하고 싶다고 해서 후원했는데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선관위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써서 내라, 어떻게 써서 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후원한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것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무조건 국고 귀속만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분명히 후원하겠다고 냈는데 그 인적사항을 파악 못 해서 국고로 귀속시킨다, 저는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후원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두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진술인 김용희 필요하면 법에 담겠습니다. 지금 현행법하에서도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은행연합회에서도……

○김기현 위원 은행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요.

○진술인 김용희 은행연합회에서 각 지점에 공문을 내게 했고 또 저희가 일주일 전에 각 후원회에 안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해당 은행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마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계속 안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금 관련 법규를 고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원인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나중에 뭐 부정한 자금 받은 것 아니냐고 막 추궁당하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참고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흔히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에 넣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 버려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는데요, 윤종빈 공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의석수 배분보다는 정당 득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은 의원들이 많은 정당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윤종빈 예.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에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1요소로 삼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진술인 윤종빈 결국은 의석수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정확하게 대변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역구 선거에서의 득표율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반영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득표율은 제2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차로 의석수를 배분해 가지고 50%인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또…… 김용희 국장님, 그러시지

요? 배분할 때 정당 득표율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고려합니다.

○김기현 위원 2개를 고려하는데 첫 번째는 의석수 먼저 고려하고 두 번째로 정당 득표율을 고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은 첫 번째 50%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골고루 똑같이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는 50% 가지고 득표수하고 의석수 가지고 50%씩 배분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구상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상찬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공술인의 진술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 질의 중에 예금자보호법이 부탁을 하면 다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지금 은행연합회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상찬 위원 강제 규정으로 돼 있지 않아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공술인이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의사진행발언에서 우리 공술인 진술을 확인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당 얘기가 돼서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우리 김정권 의원님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계류돼 있거든요. 아주 억울한 이분의 케이스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박연차 씨가 정치자금을 송금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검찰 조사에 의하면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 이름 5명인가 6명 이름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송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권 의원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송금을 하는데, 홍길동 홍길자 홍길순이 보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선관위에서 이런 것을 강제 규정으로 규정화돼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명단을 통보받지요. 그런데 이게 이름만 나오지 은행에서 확인해 주지 않아요. 물론 김정권 의원은 검찰 조사가 끝나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김정권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작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보세요, 누가 돈을 보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예금통장에 이름이 나오지요. 아까 김기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홍길동이 보냈는데 그 홍길동이 박연차 씨 회사 직원인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 김정권을 좋아하는 주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카테고리를 딱 걸어서 걸리면 우리는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술인 김용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금주가 나한테 돈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은행에 물으면 은행은 반드시 알려주도록 그렇게 강제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구상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진술인 김용희 다만 금융실명제법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연합회에 가서 문의를 하고 이것 왜 협조를 안 해 주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향후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자기네가 유권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니까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나쁜 짓만 하는 것 같고 정당한 정치자금을 받는데도 나쁜 짓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러니까 정치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관위에서, 물론 내가 실장님한테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선거법 자체가…… 선관위가 계속 단속 위주로 선거법을 계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선관위에서 잘 판단하셔서 법을 만들 때 그것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술인 김용희 잘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저도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선숙 위원 예, 그것과 관련된 거라서……

○위원장 김충조 질의시간에 하시지요. 다음 질의순서인데……

○박선숙 위원 이것은 정정 기회를 드리려고요.

○위원장 김충조 그래요, 말씀하세요.

○박선숙 위원 은행연합회의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고 금융실명제에서 금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건은 은행연합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문의하시고 답변을 다시 받아서 저희 특위에다 제출해 주세요.

○진술인 김용희 예.

○구상찬 위원 공술인이 서류로 좀 받아 주세요.

○박선숙 위원 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의 질의시간이 7분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1, 2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 특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수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주 매정하게 시간을 재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공술인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뭔가 좀 서운한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민주당의 박선숙입니다.

앞에 윤종빈 교수님과 제가 지금 성함을 찾아야 되네……

○진술인 정연정 정연정입니다.

○박선숙 위원 죄송합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이석이 많은 것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예결위가 열리고 있고 다른 상임위가 개최돼서 결례를 하는 것에 대해 좀 양해를 해 주십사, 죄송합니다.

윤 교수님께는 일단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당원협의회만으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구당을 허용할 건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정치자금의 모금과 집행에 관한 문제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또 정치적 활동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공식적으로 줄 것인가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윤 교수님 발제문을 죽 볼 때 정치자금에 관해서 현행법으로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 정치자금의 모금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활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당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당원협의회와 지구당의 차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윤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권자의 지지율, 득표율로 배분한다는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그런 유의 정치에 있어서 원천적 진입장벽 같은, 그런 정치자금의 모금과 정치 활동에 제한을 주고 있는 지구당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꼭 지구당의 명칭이 아니더라도. 일단 다른 질문을 다 드려 놓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께 좋은 말씀, 평소에 생각했던 데 대해서 많은 답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당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직에 관해서 또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직에 관해서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이 일반의 참여는 얼마나 보장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래 한 10년 정도 많은 정당들이 정당의 주요 권한인 공천 권한에서 일반 여론 혹은 당원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민주당의 역사를 죽 볼 때에도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이 완전한 답은 아니어서, 당원 중심의 정당이 유권자와 유리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의 경선 참여 문제를 열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고,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맥락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포함해서 시간이 조금 안 되니까 선관위 김용희 국장님은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방광역단체장 선거에만 후원회를 허용하는데 모든 공직선거에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앞에서 김 국장님 말씀 가운데 정당법에서 금지와 규제 위주가 아니라 정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가능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안 되는 것을 죽 만들어 놓음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권자들의 감시능력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속에 정치를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노출시킴으로써, 규제와 장벽을 없애서 노출시킴으로써 오히려 투명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실명제 등 해서 법적인 장치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치자금 범죄 중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선무효 되는 정치자금 수수죄와 선거비용 관련 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처럼 1년 이내에 판결하도록 하자는 것에 관해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취지에서, 지금 정치자금법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비용 관련 죄에 관한 많은 사건들의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합법화되어 있지 않지만 플리바겐 때문에 특정인이 저 정치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다면 그 자체가 죄로서 성립되는, 그러니까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법적 책임이 아직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술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1년 이내의 판결 확정법은 조금 오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의 처벌범위가, 저희가 선관위에 계속 문의를 해 보는데 기준과 이런 것들이 조금 경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여성재단의 기부릴레이 이끔이를 하려고 질문을 드렸더니 기부릴레이에서 '기부'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사회 각층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치인이나 혹은 다른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서 릴레이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인데 그 행위도 정치자금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경직된 해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만 드리고 답변하실 시간을……

○위원장 김충조 박선숙 위원님 질의가 끝났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박선숙 위원께서는 일괄질의를 했습니다. 일괄질의는 국회법상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는 룰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단 한 번에 걸쳐서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윤종빈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신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군소 정당하고 거대 정당 그리고 정치 신인하고 현역 의원의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공정하게 하려면 현재의 당원협의회조차도 현역 의원들이 가지는 사무실조차도 다 없애는 게 사실은 가장 공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시키는 게 낫다는 논리들을 많이 펴시는데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시키면 음성화될 때 들었던 돈의 몇 배 이상은 더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계해서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질문만 하고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아까 대답을 못 한 것 같아서……

보조금 배분 문제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한테 총 금액의 100분의 50을 우선 배분합니다. 이미 의석수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 100분의 50을 가지고 군소 정당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공정하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예 총 100이라는 숫자를 득표율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국민 지지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정연정 지금 박 위원께서 질의 주신 사항이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당 지방 조직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계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라본 우리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참여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당에 충성도를 갖는 당원들의 참여를 얼마만큼 더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정당이 더 강화될 것인가가 현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당원인 사람도 너

무 많고, 오히려 외부적 당원들 잠재적 당원들을 늘려 가기 위해서는 이게 강고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메커니즘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선제도를 늘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당의 조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선차적으로 당원들의 로열티나 충성도를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멤버십을 확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반 국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좀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현재로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구당 부활의 문제를 좀 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김용희 저한테 질문 주신 것은 지금 광역단체장한테만 후원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모든 공직선거에서 허용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전체 정치자금 규모를, 국가가 또 국민이 부담해야 될 규모를 얼마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페어(fair)하게 가려고 한다면 모든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처럼 다 후원회 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후원회 만든다고 해서 다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자가 있어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런 것을 깨끗하게, 클리어(clear) 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현실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또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것 또 지역 단위에 갔을 때 지역의,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의 규제나 이런 것과 연관되다 보면 결국 정치자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먼저 윤종빈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천 시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서 대선 6개월 전, 총선 3개월 전에 당내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공천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만일에 그 시기까지 공천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지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윤종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이익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면 그냥 훈시규정으로 그칠……

○진술인 윤종빈 저는 학자로서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든 유권자든 정책선거를 위해 준비할 시간을 서로 갖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겠지요.

○유기준 위원 정치자금 규모에 대해서 지금이 오히려 좀 적고 더 늘어날 여지도 많고 또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별로 적정 자금 규모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선거구마다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술인 윤종빈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술인 윤종빈 마음은……

○유기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정개특위나 중앙선관위하고 연구용역을 함께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각 지역구마다 정치자금의 소요 규모가 같지 않을 텐데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많은 쪽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정치자금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전체 선거구가 지금 2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시지요.

○진술인 윤종빈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정연정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당의 지방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필요한데, 반면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방조직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상근

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주말에만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보좌관 일부를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근무토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만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임차료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파트타임 잡(part time job)을 할 사람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당협위원회 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말씀하시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오는 민원의 해결이라든지 현안을 듣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연정 기본적으로 상근직에 근거해서 일종의 지구당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 담론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당원들이 자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말 큰 대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무실을 얼마나 일상적으로 지키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가의 문제는,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랑방 정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벤트와 활동과 참여 중심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당원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자원 조직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조직들에 대한 생각들을 할 뿐 사무실을 지키면서 사람을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김용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하여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재판기간도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한 외국의 입법례가 있나요?

○진술인 김용희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조사를 하면서 일종의 플리바겐처럼……

○유기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개특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한 100년 동안 선거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한 예가 한두 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 끝나면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을 기소하고 또 기소된 의원들이 한 10~20명가량 의원직을 잃고 또 그에 따른 재·보궐 선거가 자꾸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현실을 반영해서 벌금형을 좀 상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용희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유기준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 민주당 천안갑 양승조 위원입니다.

먼저 윤종빈 교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 규모의 축소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의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서 발송비용만 해도, 김용희 국장님 같이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천안갑은 9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9만 5000가구면 우편요금만 해도 330원씩 하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딱 세 번 정도만 정부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정부보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편요금만 해도 한 3000만 원이 넘고, 다른 제작비용 같은 것은 빼더라도 1억 5000만 원이면 몇 번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한 번 하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정책토론회 마련하고 연구용역 주더라도 최소한 500, 한 1000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후원금의 한도는 아주 제약

되어 있고 적은 돈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물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윤종빈 교수님께서 '정치자금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3억이면 어떻고 5억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진술인 윤종빈 예.

○양승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비 납부 당원에 대해서 모든 선거에서 우선적이고 차별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일정한, 최소한 1년간 자격 유지라든가 아니면 대납당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동원당원 내지 대납당원이 성행할 수 있고요. 오히려 지역에서 뭐랄까요, 지역 토호 같은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보는데 그점 어떻습니까?

○진술인 윤종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납의 문제가 사실은, 아마 여기 김용희 국장님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윤종빈 예.

○양승조 위원 그리고 지구당 부활 반대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는데 당원협의회를 활용해도 된다…… 그런데 현재 당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법적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윤종빈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형태의, 현역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6급 직원을 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형태는 반대한다는 취지이고요. 현재 형태로는 물론 채널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유권자와 접촉이 가능한 어떤 방식이, 돈이 안 되는 방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겁니다.

○양승조 위원 정연정 교수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각종 권한을 하부조직에 분배한다, 즉 상향식 공천 내지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럴 우려는 있습니다. 만약에 하부조직에 전부 다 결정권한이 주어진다면 지역 위원장 또는 현역 의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8대 작년 총선에서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아도 5선 의원님들 몇 분이 낙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낙선 의원이 좋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만약 이런 하부조직에 모든 권한을 분배했을 때 지역 위원장 또는 현역 의원 또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신인 진입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 점 어떻습니까? 짧게.

○진술인 정연정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승조 위원 그렇지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조직의 재정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다만 스스로 재정 충당 권한을 갖고 일정한 액수를 필요한 경비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말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한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비를 모금하는 지역에서 당비가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지역구도가 현재 어느 정도 심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랬을 때 지역구도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같은 경우 영남에서는 지역에서 모금한 당비라든가 이런 게 그 지역에 그대로 가니까 지역정당이 더 심화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또 오히려 약화되는 거지요. 그런 우려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정연정 저는 영남, 호남 특정 정당이 소재하는 지역들 간의 차이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들은 아이디어는 선거구별로 사실 당비를 납부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양승조 위원 그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진술인 정연정 예, 그런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지역정당, 지역주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치적 대표성에 문제를 줄 수 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앙당에

서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승조 위원 고맙습니다.

김용희 국장님, 일반 국민도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에서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인·단체 지정기탁이 됐을 때, 우리 김용희 국장님이 잘 적절하게 예를 제시했는데요. 1996년도 15대 총선을 맞이해서 여당이 340억 원이고 야당은 0원, 또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지정기탁금이 여당은 360억 원, 야당은 0원이거든요.

일반 국민도 개인한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 대한 후원을 허용했을 때 이런 법인·단체 지정기탁의 폐단 이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지금 해보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법인·단체에서 정당을 지정했던 그런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충분히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진술인 김용희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도 염려해서 특정 정당을 지정하더라도 50%만 해당 정당에 주고 50%는 여전히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대로 배분을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양승조 위원 법인·단체의 기탁을 허용했을 때 정경유착 가능성 그것은 지정기탁처럼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내 선거에서 당대표라든가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일반인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 선거를 치르는 당 최고위원이나 이런 경우에도 후원금 모집이 어느 정도 허용돼야 된다, 또 선거자금을 현실에 맞게끔 한도액을 정해서 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선거공영제도 한번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일문일답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사실 후원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도 그것을 다 모집하는 사람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시 후원도 좋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필을 통한 후원금 모집이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후원의 밤이라든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용희 모두 다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집회에 의한 모금을 금지했던 것은 당시 워낙에 그것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집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심지어 당시에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 1만 명 정도를 버스로 다 동원을 해서 후원회 집회를 하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강구를 해 나간다고 하면 반대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지구당을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의견을 말씀하셨나요?

○진술인 김용희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경재 위원 정연정 진술인께서는 지구당이 부활하게 되면 지구당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술인 정연정 지구당 위원장이 직접 그 위원회 이름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요, 지구당별로 그 당의 당원으로서 또는 기타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원할 수 있는 공식적 후원 장치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지요.

○이경재 위원 과거에는 원외 지구당 위원장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위원장 이름 없이 우리 한국적 정당 풍토에서 그렇게…… 그것은 당비 모으는 거지 위원장의 후원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술인 정연정 당원이 아니면서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활동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지구당 위원장의 인물을 보고 후원을 하는 이런 체제보다는 오히려 그 조직에 후원할 수 있는 일종의……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구당별로 그런 위원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서구적인 정당, 즉 미국의 정당 같으면 바로 오랜 전통을 통해 가지고 당원들이 있고 당원들이 모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 후보자도 선출하고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지만 요즘 위원장은 조직책으로 위에서부터 임명받아 가지고 당원을 자기가 구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또 당비를 많이 내는 사람이 다음에 시·군·구의원의 공천권을 사전에 팔고 사는 그런 형태로도 변질될 우려도 많거든요. 하여튼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는 그런 후원제도가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국장님, 지금 보고서에는 정당후원회에 관한 문제만 제기를 하셨는데 국회의원 후원회에 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국회의원 스스로 요즘에 죄를 지어 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선관위 자체에서 합리적인 안을 좀 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김용희 후원금 상한액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재 위원 예, 여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한 올리자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대로 상한액까지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보고되는 것 보면 대개 1억 5000이지만 평균 1억 수준에서 돼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2000, 제로도 있고 그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그런 상한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낼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 거기에 기업체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법인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 뒤로 옛날에 차떼기를 해서 수백억 원씩이나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규제하자는 얘기지 그저 몇백만 원에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용희 먼저 저는 그 상한액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인마다 역량에 따라 가지고 1억 5000 아니라 15억도 모자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활동 여하에 따라서 1억 5000도 충분한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10만 원 세액 공제되는 소액기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지만 여전히 고액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한도액을 높인다고 한다면 솔직히 위원님들 경우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받고 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대가관계나 이런 것에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부담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10만 원 세액 공제되는 그 한도 내에서 걷는 것은 별도로 회계 정리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 한도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총액의 한도를 얘기하는 것 있고 1인당 기탁금의 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1인당 기탁금 한도는 상관없지만 전체적인 한도가 그동안의 경제성장 수준 이런 것에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기업의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그 견해는 어떠냐 묻는 겁니다.

○진술인 김용희 저희 선관위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까지 국회의원 개인한테 또 정당에 직접 기부하는 것은 자칫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하는데 이것 10만 원도 소액기부제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정부예산으로 환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 돈입니다, 기업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기업들이 소속원들에게 나눠 가지고 주게 돼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줍니다'. 이것은 정경유착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술인 김용희 그 자체를 기업 돈으로 나눠 줘 가지고 내게 한다거나, 또 어떤 직업관계, 소속 직원이라는 그 자체를 이용해서 강제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겠지만, 길을 안내해 주고 권고하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500만 원 들어왔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결국은 연계된 게 아니냐 하고 수사까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은 다 압니다. 대개 산하기관들이 나눠, 나눠 가지고 10만 원씩 해 가지고 통과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더군다나 또 그 기업도 기업 돈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국고로 환급되는데 괜히 생색만 기업들이 내게 만드는, 정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좀 바꾸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낼 바에는 아예 법인세로 또는 기업에서 선관위에 내 가지고 그걸 차라리 의원들에게 얼마씩 나눠 주는 게 아주 편하게 의원들의 정경유착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웃음)

○진술인 김용희 10만 원 미만의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때 소득공제 형태가 아니고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도입했던 취지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거든요, 또 외국에서도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도입했던 것은 당시에 정경유착 고리를 어떻게 하면 단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업 기부를 전면 금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치자금을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문화 자체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그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가면서라도 그런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한 거고, 지금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그것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을 다 채운 분들이 물론 전부 다 10만 원 소액만으로 모은 것은 아니지만 약 한 50% 정도 의원님들이 거의 한도액을 다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인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진술인 김용희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선관위에서 기탁금 걷는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아까 그 소액제도를 낼 만한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미리 완전히 선관위의 권위를 이용해서 싹쓸이해 가지고 특히 야당에게 봉쇄하는 그런 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웃음)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분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전달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해서 민주노동당을 거명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개혁의 핵심이 정당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당의 강령이 있고 그 강령에 동의하는 당원이 있어야 된다, 즉 그 당원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당비를 납부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은 후원금이든 당비든 선거 전에 해 가지고 당내 선거도 내 주고, 가서 1년치 얼마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당비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지 1년에 정기적으로 얼마씩 내지 않는 그런 당원은 당원으로 인정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연정 교수께서는 충성도를 말씀하셨는데, 충성도 이전에 당원은 권리와 의무를 다 갖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당원에 가입하면 강령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양성 평등이라든지 장애인 차별 교육이라든지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고, 그 이수자만이 당내의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 어떤 선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책정당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볼 때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된 당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강연을 하러 다니면 우리나라에 한두 정당을 제외하고는 정당이 없다, 정당이라면 강령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당원이 있어야 되고 당원은 정기적으로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국고보조금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안 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국고보조금 배정을 당비 납

부율, 그다음에 당내에서 그런 각종 교육 이수자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일정 부분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여 세 분께 묻는 것은 이렇게 해서 당원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규정을 두는 건 어떠냐, 법적인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배정을 여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계시키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구당 부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이 되면 저는 당연히 지구당은 부활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정책정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음성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호세력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이른바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내내 선거운동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만 지방의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위해서도 지구당은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종빈 교수님, 정연정 교수님, 김용희 국장 세 분의 견해를 묻습니다.

○진술인 윤종빈 몇 가지 말씀 중에 이제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당비 납부 비율을 반영하자, 개인적으로 이런 안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학계에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익숙한 얘기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원이 당비를 내는 것을 강제 규정화하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구당 부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민노당은 당연히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정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구당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구당이 부활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호세력의 기득권은 없애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음성적인 자금하고 공천권 문제하고 연계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정연정 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당원의 어떤 의무 그리고 당원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법률로 강제하는 또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찬성을 하지만, 예를 들어 당비 문제도 그렇고요, 역으로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당비를 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와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명분과 이런 것들을 당이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중앙당 중심으로 또다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예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이 마련된다면 법률적 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양식에서 의석수나 정당 득표 이외에, 아까 안 계셨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당원들의 당비 납부 실적이라든지 당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말씀드려서 아마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김용희 국고보조금 배분을 당비와 연계시키자는 것, 그리고 당원의 당비 납부나 그런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법에서 정하자는 것, 그리고 지구당 부활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어떤 선택권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정당이 지역정당을 보다 조직적으로 활성화함으로 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또 그 정당의 성격상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도록 법은 허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당이 우리는 원내정당 위주로, 정책정당 위주로, 국민정당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또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법으로 재단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 발목을 묶는 거고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법으로 당비를 내야만 하게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표현이거든요. 공천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천을 상향식 공천으로 하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의 경우는 당비 내는 것도 액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내는 것도 우리 스스로 말하자면 액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넘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비도 마찬가지로 일

정한 사람이 다 내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액 후원금과 마찬가지로 당비도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당비를 내고 의무를 행사한 사람이 당연히 각종 투표, 당내 당직자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선거 후보자 그거 다 직접선거,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운동자금도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당원들이 모여서 당원들이 내는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어떤 법정 상한금보다도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거를 치를 수 있고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치르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상향 공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규제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범래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이범래 위원 먼저 김용희 국장님께, 아까 한나라당의 이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소액 후원 문제입니다.

아까 세액공제 제도로 해서 정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라는 게 봉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일반 영세상인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결국은 회사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돈을 입금합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 보고 싶은 게 그 집단의 대표가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하고, 10만 원씩 50명이 후원해 가지고 나중에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법안에 찬성발의를 하든지 찬성투표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술인 김용희 저는 어떤 법안, 정치자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에서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기본적으로 어떤 의원을 지지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하고 어떤 정치 성향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고, 또 그 돈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또 그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나 정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 잘못되고 또 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범래 위원 아니, 당연히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큰 이익집단이면 몰라도 만약에 어느 특정 회사에서 100명의 직원들에게 10만 원씩 다 넣게 하고 그 회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죄가 되겠지요?

○진술인 김용희 그 연관관계……

○이범래 위원 왜 소액, 제가 이 소액 후원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액공제 자체가 결국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우선 디자인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이 세액공제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하면 거의 70~80%가 결국은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게끔 만드는 이 제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김용희 국장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김용희 문제점은 그동안에도 누차 의원님들 통해서 지적을 받아 왔는데요, 결국은 우리 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존치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범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김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정당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당구조를 미리 법에 상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그렇습니다.

○이범래 위원 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중앙당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시도 당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아주 이상한 정당을 가진 나라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바닥에서 정당이 탄생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결국 국가에서 정당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 억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정당을 많이 연구하신 김용희 국장님 입장에서 외국처럼 차라리 국고보조금을 없애고 정당이 스스로 자기의 구조를 만들고 자생하게 하는 그게 우리나라에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술인 김용희 국고보조금 제도를 지금까지도

존치시키고 여전히 또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은, 누차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한다면 정당은 당원들의 순수 당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처음에 부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국고보조금은 그런 용도로 지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국고보조금에 의해 유지해 나가는 거고 그러한 정당 운영은 굉장히 국가 예속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범래 위원 이게 개선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시나요?

○진술인 김용희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범래 위원 제가 윤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께, 이것은 진짜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미국 정치 쪽을 보다 보니까 미국도 옛날에는 중앙에서 공천을 하다가 지금처럼 지방에서 공천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어디에서 봤습니다. 혹시 그런 원인, 그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나 이런 걸 연구하시거나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진술인 정연정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알고 계신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커스(Caucus)라 그래서 굉장히 사조직 안에서, 폐쇄성이 높은 지역 단위의 조직들이 사실은 정당의 출발점이 됐고 오히려 중앙당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요.

정치자금도 미국 정당은 지역 단위로 정치자금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사실 충원하고 중앙당은 거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진전이 되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범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 순서 알고 계시네요.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순서인 것 알고 계시지요?

○이춘석 위원 예.

○위원장 김충조 질의하십시오.

○이춘석 위원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정당법 보면 지구당 부활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어제는 공직선거법 부분이 됐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기초단체의 의원이나 장의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께서 발제한 내용을 죽 보면 기본적으로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제 공직선거법 진술인으로 나오신 임성호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저는 이 정당공천제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을 것 같은데 나오신 교수님들이 오히려 정당공천제를 둬야 한다는 쪽이 좀 많았고, 거기 하면서 이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지구당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근거로서 지금 정치가 다 중앙으로 쏠려 버리는데 지구당을 부활함으로써 이게 오히려 각 지구당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지구당이 활성화됨으로써 정당공천에서 수반되는 낙하산식 공천이 오히려 거기에서 나름대로 인재를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이 상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새로운 주장들이 나와서 '아, 좀 저런 부분들은 새로운 각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이러한 임성호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윤종빈 정당공천제 말씀하셨는데 또 놀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천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유는 정당공천제 이전에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후보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줄투표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나마 정당명을 유권자들의 투표의 근거로 주자, 그게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공천 대가가 왔다 갔다 한다,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정당공천제를 안 할 때도 어차피 음성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던 걸로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확연히 달라지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춘석 위원 정연정 교수님은……

○진술인 정연정 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소수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특히 지방자치나 행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공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기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정당공천제가 단지 그렇게 폐지되거나 나쁜 것은, 자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단 현재의 우리 정당의 모습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자치도 흔들고 공천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개혁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개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당의 지방 하부조직을 살려내고 거기에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되는 상태에서의 자치와 정당공천제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은 다수 의견들이 거기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지구당의 자치를 확장시키고 또 정당의 어떤 공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개혁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정 교수님께 후원회 설치 부분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정연정 교수님께서는 지구당별 후원회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는 부분에, 정당 추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지난번 교육감선거에서 직선제로 바꿔 버리니까…… 이 교육감선거는 광역단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자금을 투입하고 나중에 일정 부분을 환급받기는 하지만 초기 선거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출마 자체를 엄두도 못 내게 되고 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선거, 큰데, 큰 시 같은 경우는 시장선거가 국회의원선거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당선되거나 일정 부분 득표를 하면 돌려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출마 자체에 엄두를 못 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후원회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연정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지금 이 위원께서 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사실 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많이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춘석 위원 아니에요, 광역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진술인 정연정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이…… 우리가 선거공영제 얘기하고 또 미디어선거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줄이고 규제하고 이런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과연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떤 활동에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이춘석 위원 방송광고를 낸다든가 그런 게, 아주 기초적인 법정비용만 해도 몇십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따로 돈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출 때, 예를 들어서 후보자를 보내거나……

○진술인 정연정 글쎄요, 저는 잘……

○이춘석 위원 아니, 광역단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희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0만 원짜리 후원금 진짜 좋고 국회의원이 가장 부담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10만 원을 알아서 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국회의원도 상임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별로 10만 원짜리 후원금을 조사해 보면 완전히, 예를 들어서 법사위 같은 경우는 산하단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10만 원 후원금이 한 명도 없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좀 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위라든가 지식경제위원회, 산하단체가 많은 데는 거기서 다 보내 줘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특히 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돈을 내더라도 세금에서 환급받는데 굳이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10만 원짜리 후원금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

까?

○진술인 김용희 지금 그 부분, 공무원들 경우에는 기탁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10만 원 기탁을 허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낸 의견에도 정당을 지정해서 낼 수 있도록 풀어 주자 그런 내용이고, 다만 공무원들 경우에 그걸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정치자금을 내는 것도 정치활동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리고 그것을 원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원용하는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다 적용이 돼 버리고…… 그러면 촌 지역은, 군 단위 지역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월급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10만 원짜리 후원금을 어디서 받고 싶어도 공무원 제외하고 학교 선생님 제외하고 다 제외하면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의 수입이 올라오지 않으면 환급 못 받아 버리니까 필요 없고, 지금 이런 어떤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김충조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 김용희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진술인 김용희 예.

○委員長代理 張倫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윤종빈 교수님 말씀은 대개 듣고 갔는데,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협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지요?

○진술인 윤종빈 예.

○정진섭 위원 당협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실질적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회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무슨 활동을 하면 사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구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없어서, 이 당원협의회는 또 지구당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당과 시도 당은 당비 등의 돈을 갖고 있는데 당협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 외적,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협을 잘 활성화하면 될 수 있는지 비법이 있으시면 좀 전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술인 윤종빈 저도 비법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 보겠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 보니까 회계의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는 어떤 변명거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 제한 등을 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다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전한 정당활동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야 되는 것까지 제약을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저는 과거의 우리 정당 발전사가, 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명망가들의 클럽 식 운영, 그다음에 당원들이 중심이 된 어떤 당원에 의한 정당, 이제는 그것도 뛰어넘어서 지지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의 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비교적 당비를 많이 걷고 있는 정당이고 당비 납부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당원이 정당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고 또 당비를 많이 걷느냐 하는 것도 따라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국고보조금의 배분에도 당비를 걷는 것을 연계하자라고까지 우리 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던데, 지금 정당의 추세가 지지자의 정당임을 생각하면, 지지자들이 오히려 중심이 되는 정당임을 생각하면 너무 좀 구시대에 머무르는 것 아닌가, 그런 데 연계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진술인 정연정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당의 현실을 한나라당과 다른 어떤 정당들에 맞추어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비를 많이 걷는 것은 결과이고 그 당비가 어떻게 충당이 되는가를 보면 사실은 당원 중심의 정당체제도 우리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당비의 납부를 통해서 자기의 참여를 보장받는 당원체제의 당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거에 임박하거나 특별히 특정인을 위해서 충당해 주는 형태의 당비라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의 수준에 우리가 맞추어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활동들은 이미 발전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과 당비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연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섭 위원 물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당원들에 의한 경선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많은 당원을 끌어들이는 것은 있지만 그건 한 해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는 주요 정당들은 당비를 많이 내는 제도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자 정당으로 가고 오픈 프라이머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판이라면 이제 당원에 대한 중요성은 좀 낮추어 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김 국장님, 자료에 보니까 지지자 정당 추세에 맞추어서 당비 말고 지지자들이 정당에 돈을 내는, 소액을 내는 제도를 하자, 그렇게 자료에 있더라고요.

○진술인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저는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안하신 건가요?

○진술인 김용희 한도액은 당에서 어떤 부담을 갖지 않도록 100만 원 이내로 하자라는 것은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요, 그런 돈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정당이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내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자기 의사표현의 수단인데 그 자체가 지금 현행 법제도에서 봉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진섭 위원 과거의 후원회하고 어떻게 차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인이 못 낸다든가 고액을 못 낸다든가 그런 제한만 가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후원회와 유사합니다.

(장윤석 간사, 김충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섭 위원 유사한 거지요?

○진술인 김용희 예.

○정진섭 위원 자료는 와서 나중에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은 것으로 제가 하는데 하나 특별하게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윤 교수님이 관심을 많이 표시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정책연구소에도 있어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주게 되어 있어요. 준다고, 형식적으로 주지요.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주지 말고 정책연구소에 직접 교부를 해야 되는데 정당을 통해서 오니까 회계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또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지난 14년 동안 국민 1인당 800원이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지요?

○진술인 윤종빈 올랐어요.

○정진섭 위원 오른 것 없습니다. 작년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한다 그 정도지요?

○진술인 윤종빈 예.

○정진섭 위원 그런데 나는 국가가 정당 보고 정책연구소를 만들어라라고 강제를 하면서 그 정책연구비에 대한 지원을 정당에게 맡긴 거지,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원 정도씩 늘려서 정책연구소를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책연구소를 독립시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이 보수 진보 양쪽으로 나뉘든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수에다가 각 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국민 1인당 한 200원 정도씩 정책개발비를 만들고 조성하고 그걸 정책연구소에 직접 교부하는 그런 제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길을 열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용희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총액에서 30% 정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은 실태를 보게 되면 주었다 다시 뺏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에 지급하는 법안을 갖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해서 정책연구소 간부들 워크숍을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거기 참석했다 오늘 또 여기 참석 때문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조금 길어져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이 기본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이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정진섭 위원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진술인 김용희 예, 국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에 결국은 정책선거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보다 더 득표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 예를 일본의 사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정당도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지와 또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섭 위원 제가 명문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정 교수님은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말씀이지요?

○진술인 정연정 과거의 지구당이 아니고요. 가칭 정당의 지방조직을 다시 재구성하자라는 겁니다.

○정진섭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진술인 정연정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구당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당이 엄격히 말하면 과거 정당의 지방조직이었습니다, 그것의 권한도 없었고 여러 가지 제한도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권한과 재정적 독립과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지역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서의 기구를 만들어 내자라는……

○정진섭 위원 3계층은 맞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지구당이 있는 거지요?

○진술인 정연정 그렇습니다. 예.

○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오늘 세 분 전문가 공술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다시 또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논의된 의제들이 2004년입니까? 이른바 오세훈법에 따라서 오늘은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입니다마는 그때의 개혁이라고 해서 소위 개정 도입되었던 제도들에 관해서 많이 거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당연히 고쳐나가야지요. 또 국민들의 의견 또 정당활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정도 하고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2004년이고 지금이 2009년이니까 한 5년, 6년 시행을 해 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정치권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년간의 검증 운영기간이 충분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적용도 하고 다소 지금 불편하다고 그럴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정치권 또는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좀 불편하다고 하는 점을 지금 고쳐야 할 때인가, 조금 더 적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물론 개별 개별 사안을 가지고 보면 다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치 개혁하자고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런 시각에서 세 분 전문가들께서 한번 총괄적인 의견을 제가 제일 끝 질의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윤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윤종빈 예, 말씀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 이후에 5, 6년의 기간입니다마는 아직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실험을 해 보고 좀더 충분한 사례를 경험을 한 이후에 개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느끼지만 아마 현실 정치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아까 소액 다수지만 실제로 임원들이 하는 것, 임원들이 나누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대가성으로 연결된다는 정도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대가성으로 연결된다는 요구를 한다는 부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조금 불편한 것들을 고치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張倫碩 委員 정 교수님.

○진술인 정연정 제도가 생성이 되면 그 제도가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정치개혁에서 기본적인 쟁점사항들을 고려할 때 아까 초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이 지향하는,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장기적 과제에 대한 단기적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의 한 텀들이 시작될 때마다 돌다리를 놓듯이 하나씩 바꿔가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편의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고 그런 궁극적인 정치 지향을 위해서 저는 지구당 문제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기고 넘어가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개혁 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張倫碩 委員 감사합니다.

○진술인 김용희 2004년 정치관계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우리 정치가 맑아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는 지난 역사 한 20년 정도 추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공화국 때만 하더라도 정치자금이라는 그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하사금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됐고 정당도 그렇고 국회의원 개인들한테도 그렇고?

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8000억, 거의 추정치로는 1조가 각각 정권마다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92년도에 선거 치를 때만 하더라도 한 정당에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1조가량 되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차떼기 정당이니 뭐니 하고 숱한 비난을 감수했는데 그때 모금해서 쓴 돈이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는 847억입니다.

이러한 비난들을 숱하게 쏟아내고 했지만 과거의 정치자금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고 정말 조족지혈이고 더군다나 우리 경제규모가 발전해 온 규모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적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치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맑아지고 깨끗해져야겠지만 계속해서 조여만 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을 하고 또 선거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또 후보자마다 참여의 룰, 선거의 룰을 염평하게 가지고 가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부분부분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張倫碩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했습니다.

장윤석 위원께서 정리성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공술인들 답변도 그런 답변 같으니까 지금 이 시간은 추가질의 내지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전부 끝났습니다. 오늘 중식시간까지 넘기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술인 세 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정을 바쳐 올립니다.

오늘 공술해 주신 공술인분들의 전문가적인 의견은 앞으로 국회에서 정개특위 활동으로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개정함에 있어서 폭넓게 또 깊이 있게 참고가 되리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술인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특위활동에 진지성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세 번째로 국회 개혁 관련 공청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요.

오늘 구상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공술인 분들

에게 제출한 바가 있지요?

공청회에 관련해서……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술인분들께서, 서면질의에 서면답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혹시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상찬 위원이 서면질의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진술인 김용희 제가 먼저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김 국장께서 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용희 첫 번째는 정치자금 개선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문제에 대해서 지구당 부활이 되었든 당원협의회가 되었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했듯이 지구당을 법적으로 부활시켜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정당, 대중정당 형태로 갈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은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기본이고 또 정당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되지 않도록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단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후원금만 가지고 계속 소액다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임원들이 이름만 빌려 가지고 정치자금을 쪼개 후원하는 방식이다, 여러 차례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도 소액 다수의 후원금 모금을 권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국고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내 돈을 주는 것은 번들링이라고 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고 그 사람의 돈으로 내는데 우리 기업에, 혹은 우리 단체에 도움을 주는 의원이니까 우리 그쪽에다가, 또 세 환급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내자라고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문화로 가야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중단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단체의 후원금을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또 혹은 정당에 직접 주게 하는 것은 우리 과거의 정치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감사합니다.

구상찬 위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의서는 지금 답변과 함께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공청회 순서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강 기 정	구 상 찬	권 영 길	김 기 현
김 충 조	박 선 숙	양 승 조	유 기 준
이 경 재	이 범 래	이 상 민	이 용 경
이 춘 석	장 윤 석	정 진 섭	주 호 영
최 재 성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천	병 호
입 법 심 의 관		서	도 석

○출석 진술인

윤종빈(명지대학교 교수)

정연정(배재대학교 교수)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지원국장)